

군산시 농업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5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86호

**군산시 농업인의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 5. 화장실

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본 동 선*



2015년 5월 15일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587호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군산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북은행 군산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장, 군산시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를 “6인이상 8인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 업무관련 국장
2. 군산시의회 의원
3. 경제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4. 군산시 금융기관 임원
5. 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에 의한 <u>군산시용자심의위원회</u>의 위원은 <u>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군산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전북은행 군산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장, 군산시 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 ----- ----- ----- <u>6인이</u> <u>상 8인 이내로</u>----- ----- ----- ----- ----- ----- ----- -----</p> <p>② 위원은 <u>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군산시 업무관련 국장</u></li> <li>2. <u>군산시의회 의원</u></li> <li>3. <u>경제 관련기관·단체의 임원</u></li> <li>4. <u>군산시 금융기관 임원</u></li> <li>5. <u>그밖의 투자 및 기업관련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u></li> </ol> <p>③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지원과장으로 한다.</u></p>

군산시 고시 제 2015 - 69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5. 4.

###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당북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에스엠주택건설주식회사
  - 나. 대표자 : 장길현
  - 다.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대산빌딩5층
3. 시 공 자 : 변경없음
  - 가. 명 칭 : 주식회사대광건영
  - 나. 대표자 : 조태석
  - 다.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24
4. 사업내용 : 변경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61-1외 76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나. 대지면적 : 21,073㎡
  - 다. 건축면적 : 4,014.5817㎡
  - 라. 연 면 적 : 67,272.6949㎡
  - 마. 건축규모 : 아파트 5동 29층, 469세대

바.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sup>2</sup> )	공용면적(m <sup>2</sup> )	공급면적(m <sup>2</sup> )	비고
84A형	민영주택	380	84.9959	24.7825	109.7784	
84B형	민영주택	46	84.9949	26.3697	111.3646	
84C형	민영주택	43	84.9768	26.5761	111.5529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 사업비 : 107,706,240천원

자. 사업기간 : 2015년 05월 01일 ~ 2017년 11월 30일

5. 주요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 기타 건축구조 및 평면등 변경사항

6. 설계도서 : 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7.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15. 4. 29.

8.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 2015-73 호

###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5.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20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2015/2016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5-766호

2015/2016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1. 2015/2016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수면번호	어업의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적(ha)	위치	개발방법	개발조건
②	해조류양식	부류망홍	김 등	70	개야도인근	일반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627호, 제5590호) 포기 및 양식재해보험(김) 가입 조건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③	해조류양식	부류망홍	김 등	142	선유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 (제5645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④	해조류양식	부류망홍	김 등	5	관리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기존어장 (제5506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⑨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30	새만금방조제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⑩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25	새만금방조제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⑪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25	새만금방조제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⑫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25	새만금방조제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⑬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30	말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⑭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새꼬막 등	30	명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⑮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새꼬막 등	30	방축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⑯	패류양식	바닥식(살포식)	피조개 등	30	관리도인근	한정어업면허	기존어장(제5527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증)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수면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적 (ha)	위치	개발방법	개발조건
⑰	패류양식	바닥식 (살포식)	피조개 등	30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신규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⑱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살포식)	해조류, 패류	100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645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⑲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살포식)	해조류, 패류	100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645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⑳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살포식)	해조류, 패류	70	무녀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632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㉑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20	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04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㉒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5	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05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㉓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0	명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251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㉔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0	명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06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㉕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2	방축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5208호), 어장대체(제5234호)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㉖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3	방축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280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㉗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0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 (제5226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㉘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0	관리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 (제5209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㉙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0	관리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275호,제5578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㉚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5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18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㉛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7	성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254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㉜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5	무녀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23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수면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적 (ha)	위치	개발방법	개발조건
㉓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9	무녀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4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여촌계에 개발
㉔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2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243호,제5244호) 포기 및 관련 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여촌계 대체개발
㉕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6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270호) 포기 및 관련기관 협의 조건(공중) 한정어업면허 대체개발 ※ 기존 여촌계 대체개발
㉖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0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공중), 기존어장(제 525호) 기간만료 한정어업면허 재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여촌계에 개발
㉗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18	비안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의 협의조건(공중)으로 신규 한 정어업개발 ※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여촌계에 개발

## 2. 2014년/201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국가 공익사업이 계획 고시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하고 해소되지 않을 시는 면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정어업 면허는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 및 지역에 한하여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금회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국제해양관광 단지조성, 새만금 신항만개발, 한국수력원자력(주) 관련 사업, 새만금 내부 개발 해사도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목, 중요확보곤란 및 수급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15. 5. 22부터 2015. 5. 29. 18:00까지
- 제출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 (어촌계 기존어장 재배치 포기조건 대체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위치도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해양수산과 (☎ 063-454-2912)

2015. 5. 6.

군 산 시 장